

행정자치부

주의요구

제 목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 사용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산청군

내 용

식품을 제조·가공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할 시·군에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 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 받은 등록 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식품첨가물공전」 제5의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르면 합성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은 일부 식품에 제한적²¹²⁾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12)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팔 등 양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빵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장류 : 0.2g/kg 이하, 13. 소스류 :

따라서 사카린나트륨이 사용된 식품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반려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산청군에서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인 (주)○○○○ 등 7개소가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 ○○○○ (식품유형 : 절임류) 등 11개 제품’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함안군수, 고성군수, 산청군수는**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확인·검토하는 등 식품품목제조보고 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조제커피, 액상커피 : 0.2g/kg 이하, 16. 탁주 : 0.08g/kg 이하, 17. 소주 : 0.08g/kg 이하, 18. 과실주 : 0.08g/kg 이하, 19.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20. 빵류 : 0.17g/kg 이하, 21. 과자 : 0.1g/kg 이하, 22. 캔디류 : 0.5g/kg 이하, 23. 빙과류 : 0.1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5. 조미건어포류 : 0.1g/kg 이하